

# 2019년 LBEST 주거래 협력회사 접수 안내

## ■ 등록제 실시 목적

- 공정거래위원회 '협력업체 선정.운용 가이드라인' 을 준용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등록과 운용을 통해서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
- 우수한 협력회사를 당사의 파트너사로 등록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Creative를 제공

## ■ 등록 공지 일정 : 2019년 5월 3일(금) ~ 5월 31일(금)

## ■ 등록 공지 매체 : 당사 홈페이지 www.lbest.com, 제작관리시스템 pms.lgad.co.kr

## ■ 접수 방법

부 문	세부업종
영상프로덕션(통합)	TVC프로덕션, 바이럴영상
ATL(5)	POST프로덕션 / 녹음 / 디자인프로덕션 / 모델에이전시 / 제판, 출력
Digital(1)	인터랙티브(디지털캠페인, 소셜미디어 제작 및 운영, 바이럴캠페인 운영)

2. 접수방법: 당사 지정 e-mail 통한 온라인 지원 (lbestpartner@lbest.com)

부 문	지원서류	해당업종
협력업체 (신규 / 기존)	①등록신청서(당사 제공 양식) ②18년 제작 한 대표작품(프로젝트) - ATL 3건 이내 . 영상프로덕션(통합), ATL: 제작 방향, 스토리보드, Staff List, 산출내역서(요약본), 작품영 상파일 ③회사소개서 ④사업자등록증사본 ⑤재무제표(2년) ⑥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해 당 없음) ⑦고객구성표 ⑧ 회사 조직도 ⑨ 포트폴리오(최근2년) ⑩자격증, 면허증 ⑪ 신용평가 결과보고서 (한국기업데이터 * 해당업종 한 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상프로덕션(통합): TVC, 바이럴영상</li> <li>• ATL: POST프로덕션, 녹음, 디자인프로덕 션</li> <li>* 모델에이전시, 제판/출력 업종은 ①, ③, ④ ⑦, ⑧ 서류 제출</li> <li>* 대표작품 표준 양식 없음 (각 10장 이내)</li> </ul>
공 통	<b>기업신용평가 결과서 제출(미제출시 지원 불가): 해당 업종에 한 함</b> - (주)한국기업데이터_기업신용인증서(KCR-2) 제출 : 신용등급 : B 이상 Pass 문의사항 : 김장유 팀장(신용평가사업부) 1811-8883~4, kjy@kedkorea.co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상프로덕션 (통합)</li> <li>- TVC, 바이럴영상</li> </ul>

\*유의 사항 :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미실시

3. 접수일 : 2019년 5월 13일(월) ~ 5월 31일(금)

4. 최종결과공지 : 6월말 예정

5. 업무적용 : 2019년 7월 1일

6. 문의처 : LB경영지원팀 탁찬호책임(02-3475-8886, chtark@lbest.com), 박초롱선임(02-3475-8804, green@lbest.com)

## ■ 접수 시 유의사항

- 지원시 지원 희망 업종은 복수 지원불가하며, 지원분야 잘 모를 경우 사전에 문의
- 기존 등록 협력회사도 신규와 동일하게 제출서류 해당 기일내 반드시 접수
- 광고상수상은 '18년도 실적에 해당하며, 성실히 기입할 것 (평가 반영 함)
- POST프로덕션, 녹음 업종은 ATL, BTL 영역 구분 없음. 반드시 각 사를 대표하는 TD 기입 할 것. (평가표 적용)
- 대표 작품 및 프로젝트는 '18년도 제작에 한정하며, 필요시 제출 동영상 파일은 총100MB 이하로 제한
- 제출서류는 합본하지 말고 별도 파일로 구분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제출
- 재무제표는 2개년 제출해야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서에 신설법인으로 표기
- 모델에이전시 업종은 등록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회사소개서 3가지 서류만 제출

## ■ 선정 기준

구분	세부내용	배점	비고
Creative 평가	• Creative 및 Producing 내부 심사위원단의 평가	70	
가격경쟁력 평가	• 본 프로젝트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작하였는가	10	
역량평가	• 광고상수상실적	10	
경영평가	• 신용인증서 B등급 이상 (영상프로덕션, 전시, 이벤트 업종 限)	10	신용등급 B등급 이상 (미제출시 지원불가)
정도경영 평가	• 등록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존재 여부	Y/N	

## ■ 등록취소기준

구분	세부내역
수급사업자 귀책사유	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주처 (사회 통념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고객과 우리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업체) • 품질, 안전, 보안, 윤리사고로 등록취소기로 결정된 회사 또는 동 사유로 고객 또는 발주부서로부터 연간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회사
정상적인 경영 불가	• 부도, 휴업, 폐업 등 / 타사업자 등으로 우회 계약 및 지급 요청
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	• 2차 하도급회사에 대한 고의적인 지불불량 회사 / 담합, 덤핑 등 하도급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회사 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계약 위반	• 견적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배하여 당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등록협력회사 •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당사의 요구에 대한 delivery 미준수 /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(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다른 업무를 이유 등)
정도 경영	• 당사의 규정이나 정도경영실천서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정당한 구매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객과 우리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업체
영업 방해	• 당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정보를 경쟁사 또는 고객에게 유출하여 당사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업체
기타	• 특수관계인 정보 고의 누락